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2-05

인 천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50630 취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및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시 ◯◯구청장
변 론 종 결	2024. 10. 11.
판 결 선 고	2024. 11. 22.

주 문

1. 피고가,

 가. 2021. 12. 9. 원고에게 한 취득세 155,424,000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28,524,8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나. 2021. 12. 13. 원고에게 한 취득세 25,581,020원, 지방교육세 5,116,200원의 경정거부처분과 취득세 24,887,300원, 지방교육세 4,977,46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2-05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변경전 상호 B 주식회사[1])는 1998. 12. 4. ○○시 C(도로명 주소 ○○시 D)를 본점으로 하여 금형용 스프링 제조 및 도매업, 조립식건물 건설업, 일반 건설업,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사업목적 중 건설업,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등은 2004. 2. 6.경 추가된 것이다).

나. 원고는 2015. 7. 1. ○○시 ○○구 E 공장용지 2002.4㎡(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 콘크리트평슬래브지붕 3층 공장 1층 1174.86㎡, 2층 1174.86㎡, 3층 1174.86㎡, 옥탑 139.86㎡(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하며, 이 사건 제1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같은 날 취득가액 6,367,4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54,696,000원, 지방교육세 25,469,600원, 농어촌특별세 12,734,800원 합계 292,900,4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6. 9. 25. 원고에게 '원고가 담당공무원의 현지 출장확인일인 2016. 9. 23. 본점을 이 사건 제1건물로 사실상 이전한 것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른 대도시내 법인 취득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 납부대상에 해당하므로 자진신고 및 납부하라'는 내용의 안내를 하였고, 원고는 2016. 11. 1. 이 사건 제1건물 3층 중 사무실 354㎡ 부분을 2015. 7. 1. 취득한

1) 원고의 상호는 2004. 2. 6. B 주식회사에서 현재의 A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2-05

후 2016. 10. 27.부터 사실상 본점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중과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의 액수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5,581,020원, 지방교육세 5,116,200원, 합계 30,697,2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7. 6. 5. 원고에게 '대도시내에서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 후 5년 이내 대도시내 지역에 본점이나 지점을 설치하게 될 경우 취득 부동산 중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과세율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담당공무원이 2017. 5. 31. 이 사건 제1부동산에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당초 미사용 약속과 달리 이 사건 제1건물 3층 전체 및 1층 일부를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바, 원고가 직접 사용하고 있는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면적을 자진하여 신고·납부하라'는 내용의 안내를 하였고, 원고는 2017. 8. 21. 이 사건 제1건물 3층 중 창고 344.4㎡ 부분을 2015. 7. 1. 취득한 후 2017. 8. 1.부터 사실상 본점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중과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의 액수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4,887,300원, 지방교육세 4,977,460원, 합계 29,864,7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원고는 2020. 9. 9. ○○시 ○○구 F 공장용지 988㎡(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공장 건물(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하며, 이 사건 제2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같은 날 취득가액 3,2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28,000,000원, 지방교육세 12,800,000원, 농어촌특별세 6,400,000원, 합계 147,2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2-05

바. 피고는 이 사건 제2부동산 역시 원고가 대도시 내 본점을 이전한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1. 10. 21.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의 중과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183,948,800원(취득세 155,424,000원, 지방교육세 28,524,800원, 가산세 포함)의 과세를 예고하였고, 2021. 12. 9. 위 세액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2021. 10. 21. 피고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2016. 11. 1.자 및 2017. 8. 21.자로 각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해달라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12. 13.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는 2022. 3. 10. ○○도에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며, ○○도가 2022. 6. 8.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자, 2022. 9. 8.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도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23. 10. 31.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원고의 대표이사 G은 원고 설립 이전인 1989. 4. 7.부터 ○○시 ○○구 H(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I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개인사업으로 운영하다가 1998.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2-05

12. 4. 본점은 ○○시 C로, 사업목적은 제조업으로 각 정하여 원고를 설립하였으며, 1998. 12. 31. I의 사업을 원고에게 승계하고 I을 폐업하였다. 그 후 원고는 제조업은 위 ○○시 소재 사업장에서 영위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도 건설업을 계속 영위하였는데, 원고의 주업은 건설업(매출의 약 93%)이었기에 이 사건 사업장이 원고의 사실상의 본점이었다. 원고는 적어도 1998. 12. 31. 이후부터 이 사건 사업장을 사실상 본점으로 하여 영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여 왔기에, 원고가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대도시 내 지역(즉, ○○시 내 지역)으로 원고의 본점을 전입하기 이전에 원고의 본점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제2부동산이 원고가 대도시 내(○○시 내)로 본점을 이전한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부과처분과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내지 관련 법리

1) 구 지방세법(2023. 3. 14. 법률 제191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2항 제1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의하면,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하고, 여기에는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본점을 대도시로 전입하기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등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 및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본점을 대도시로 전입한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2-05

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이 포함된다.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지방세법의 입법 취지는 대도시의 인구팽창의 억제, 환경의 순화보존 및 지역 간의 균형적 발전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규정상의 법인 설립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등기부의 기재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본점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곳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대도시 내에 본점을 설치하고 있던 법인이 당해 대도시 내에 있는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여 지점을 설치하였으나 실제로는 종전의 본점을 폐쇄하고 새로 취득한 부동산 소재지에 인적, 물적 설비를 이전하여 사실상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구 지방세법 소정의 취득세 중과요건을 결하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누7207 판결,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두11786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6, 7, 11 내지 13, 27, 29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1) 법인등기부상 원고의 본점은 그 설립 시부터 현재까지 ○○시 C(도로명 주소 ○○시 D)(이하 '○○ 사업장'이라 한다)로 등재되어 있고, G은 1996. 8. 28. ○○ 사업장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원고는 1999. 1. 14. ○○ 사업장의 공장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G은 1989. 4. 7.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I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개인사업으로 운영하다가 1998. 12. 31. 폐업하였으며, 1989. 10.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사업장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2-05

인근의 ○○시 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다.

3) 원고는 2005. 1. 28. J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 지상 건물 중 1층 약 18평(방2개 포함)을 임대차보증금 32,000,000원 월 차임 650,000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임대차계약에는 위 건물의 마당 뒤에 있는 창고는 임대차계약 종료 시 원고의 책임으로 철거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특약사항이 있다. 원고는 2011. 5. 26. J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 및 그 지상 건물을 증여받은 공유자 중 1인인 K와 사이에 월차임을 700,000원으로 증액하되 그 외에는 위 2005. 1. 28.자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4) 피고의 담당공무원은 2016. 8. 8. 이 사건 사업장으로 출장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 지상 건물 1층 대부분을 임차하여 사무실 및 건설장비 부품보관 및 수리실로 사용 중이고, 사무실에는 대표이사 G과 여자 경리사원이 근무 중이었고 건설현장 관련 모든 서류들이 보관되어 있었으며 건설현장별로 관리 중이었음을 확인하였다. 위 담당공무원은 같은 날 ○○ 사업장에도 출장하여 ○○ 사업장의 건물은 2000년식 공장건물로 산업용 사각스프링(금형) 제조공장과 판매를 하는 곳으로 주업으로 신고된 건설분야 업무는 ○○ 사업장에서 수행하지 않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행하며, ○○ 사업장은 금형 사각스프링 생산공장으로 사용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5) 원고는 2004년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 인근에 위치한 ○○시 ○○동 소재 ○○○○은행 ○○동 지점에서 계좌를 개설하여 거래를 하여왔으며, 피고의 담당공무원이 2016. 8. 8. 제출받은 원고의 대표이사 G의 명함에는 사업분야로 '건축공사·토목공사·판넬·H빔 철구조물제작'이, 사무실 주소와 전화번호로 이 사건 사업장의 주소,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공장이라는 명칭으로 ○○ 사업장의 전화번호만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2-05

기재되어 있으며, ○○사업장에서 제조업 분야를 총괄하고 있는 원고의 전무이사 L의 명함에는 사업분야로 '금형사각스프링·산업용스프링'이, 본사·공장 주소와 전화번호로 ○○ 사업장의 주소,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6) 피고의 담당공무원이 2016. 9. 23. 출장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을 중단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7) 피고의 담당공무원은 2016. 10. 27. 이 사건 제1건물로 출장하여 그 건물 3층 중 354㎡ 정도의 공간을 원고가 대표이사실, 회의실, 서고 및 현장관리팀과 기술지원팀, 경영지원팀으로 사용 중임을 확인하였고, 나머지 3층 공간과 2층은 전체가 공실이며, 1층은 기숙사 및 M 주식회사에 임대 중인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원고 측은 2016. 10. 27. 이사를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업무개시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8) 원고는 늦어도 2017. 5. 31.경부터는 이 사건 제1건물 3층의 공실 중 일부를 창고로 사용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별표1에 의하면 ○○시는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어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서 정하는 대도시에 해당하나, ○○시는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지 않아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서 정하는 대도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의 본점이 법인등기부의 기재와 달리 2016. 9. 23.경 이 사건 제1건물로 실질적으로 이전되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앞서 본 관계 법령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 전입 이전 원고의 본점이 종래 ○○ 사업장에 있었던 것이라면 원고가 법인의 본점을 대도시로 전입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취득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2-05

은 중과세 대상이며, 원고의 종래 본점이 이 사건 사업장에 있었던 것이라면 원고가 법인의 본점을 같은 대도시(◯◯시) 내에서 전입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취득은 중과세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본점 전입 이전에 이 사건 사업장이 원고의 사실상 본점에 해당하였는지 여부이다.

2)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16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본점 전입 이전에 실질적으로 원고의 본점 역할을 수행한 곳은 ◯◯ 사업장이 아닌 이 사건 사업장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종전의 사실상 본점인 이 사건 사업장을 폐쇄하고 같은 대도시(◯◯시) 내에 있는 이 사건 제1건물로 본점을 이전하였다고 인정하는 이상 구 지방세법 소정의 취득세 중과요건을 결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원고의 대표이사 G이 원고를 설립하고 지배·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건 사업장에 대표이사실이 있고 G은 ◯◯시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여왔는바(반면, ◯◯ 사업장에는 대표이사 집무실이 존재하지 않았다), 원고의 본점 전입 이전에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원고의 중추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사업장은 원고의 본점 전입 직전에 폐쇄된 반면 ◯◯ 사업장은 원고의 본점 전입 후에도 그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 사업장이 아닌 이 사건 사업장의 기능 내지 인적·물적 설비가 이 사건 제1건물로 이전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달리 경영의 주된 기능이 ◯◯ 사업장에서 이 사건 제1건물로 이전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

다) 원고의 사업은 건설업과 제조업으로 구성되는데, 건설업의 매출이 제조업의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2-05

매출 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주된 사업은 건설업이라고 할 수 있다. 원고는 원고의 본점 전입 이전 이 사건 사업장에서 건설업 수행을 위한 주요 영업자료를 갖춘 상태에서 건설업을 영위하였고, ○○ 사업장에서는 생산설비를 갖춘 상태에서 제조업을 각 영위하였는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원고의 주된 사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라) 건설업의 총무·회계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제조업의 총무·회계는 ○○ 사업장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대표이사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주로 근무하였으며, 원고의 주거래 은행도 이 사건 사업장과 같은 지역 내에 있으므로, 원고의 각 사업별 재무, 회계를 총괄하는 업무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이 있는 건물이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물이며 그 사무실이 약 18평에 불과한데, ○○ 사업장의 사무실은 약 33.5평에 달한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 사업장이 법인등기부상 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원고의 본점 역할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 사업장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제9호증)에 의하면 사무실 용도의 건물 면적이 약 33.5평(110.83㎡)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 사업장 사무실을 촬영한 사진(갑 제21호증)에 의하면 실제 사무공간으로 사용되는 면적은 위 건축물대장의 기재보다 좁은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 사업장의 공간 구성과 현황, 활용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지적하는 사정만으로 위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2-05

재판장 판사 호○○

판사 신○○

판사 임○○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2-05

별지

관련 법령

■ 구 지방세법(2023. 3. 14. 법률 제191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제1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호 생략)

■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2-05

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사무소 등의 범위) 영 제27조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법인세법」 제111조·「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제외한다.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

■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제1항의 표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2-05

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 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호 생략)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은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2-05

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17. 7. 26. 행정안전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사무소 등의 범위)

영 제27조제3항 전단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법인세법」 제111조·「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제외한다.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권역의 구분과 지정)

①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3호 생략)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2-05

②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권역의 범위)

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별표1]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제9조 관련)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1. 서울특별시 2.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3. 의정부시 4. 구리시 5.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6. 하남시 7. 고양시 8. 수원시 9. 성남시 10. 안양시 11. 부천시 12. 광명시 13. 과천시 14. 의왕시 15. 군포시 16.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1.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만 해당한다] 2. 동두천시 3. 안산시 4. 오산시 5. 평택시 6. 파주시 7. 남양주시(별내동, 와부읍, 진전읍, 별내면, 퇴계원면, 진건읍 및 오남읍만 해당한다) 8. 용인시(신갈동, 하갈동, 영덕동, 구갈동, 상갈동, 보라동, 지곡동, 공세동, 고매동, 농서동, 서천동, 언남동, 청덕동, 마북동, 동백동, 중동, 상하동, 보정동, 풍덕천동, 신봉동, 죽전동, 동천동, 고기동, 상현동, 성복동, 남사면, 이동면 및 원삼면 목신리·죽릉리·학일리·독성리·고당리·문촌리만 해당한다) 9. 연천군 10. 포천시 11. 양주시 12. 김포시 13. 화성시 14. 안성시(가사동, 가현동,	1. 이천시 2. 남양주시(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만 해당한다) 3. 용인시(김량장동, 남동, 역북동, 삼가동, 유방동, 고림동, 마평동, 운학동, 호동, 해곡동, 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사암리·미평리·좌항리·맹리·두창리만 해당한다) 4. 가평군 5. 양평군 6. 여주시 7. 광주시 8. 안성시(일죽면, 죽산면 죽산리·용설리·장계리·매산리·장릉리·장원리·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덕산리·율곡리·내장리·배태리만 해당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2-05

	명륜동, 숭인동, 봉남동, 구포동, 동본동, 영동, 봉산동, 성남동, 창전동, 낙원동, 옥천동, 현수동, 발화동, 옥산동, 석정동, 서인동, 인지동, 아양동, 신흥동, 도기동, 계동, 중리동, 사곡동, 금석동, 당왕동, 신모산동, 신소현동, 신건지동, 금산동, 연지동, 대천동, 대덕면, 미양면, 공도읍, 원곡면, 보개면, 금광면, 서운면, 양성면, 고삼면, 죽산면 두교리·당목리·칠장리 및 삼죽면 마전리·미장리·진촌리·기솔리·내강리만 해당한다) 15. 시흥시 중 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끝.